

제417회 임시회
'24. 6. 11.(화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김정일 의원 등 7명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24년 5월 30일

○ 회부일자 : 2024년 5월 31일

3. 제안사유

- 충청북도 ‘보훈명예수당’의 지급대상 범위에 특수임무유공자를 추가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특수임무를 수행하며 헌신한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고,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에 특수임무유공자를 추가하여 규정함(안 제7조2)

5. 검토의견

가. 제출배경
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사업과 추모사업을 지원하는 등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(宣揚)

하고,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.

- 이에 따라 충청북도에서는 동 시행령에 근거하여 특수임무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해 왔음. 그러나 「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는 보훈명예수당과 관련한 조항이 있지만, 특수임무유공자는 제외되어 있었음.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있는 보훈명예수당에 특수임무유공자를 추가하여,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충청북도에서는 총 4종의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지급현황은 아래와 같음.

<보훈명예수당 지급현황>

구 분	자격	월 지급액	인원	예산액
참전유공자	본인	6만원	6,637명	4,778,640천원
독립유공자 유족	65세 이상 선순위자	3만원	224명	80,640천원
전몰군경 유족	65세 이상 선순위자	3만원	1,092명	393,120천원
특수임무유공자	본인	6만원	49명	29,400천원

- 이번 개정안은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에 특수임무유공자를 추가하는 것으로, 이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임.

〈신 · 구조문대비표〉

현 행	개 정 안
제7조의2(보훈명예수당)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내 주소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(이하 “수당” 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	제7조의2(보훈명예수당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.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〈신 설〉	3. 「 <u>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</u> 」 제3조제2호 · 제3호에 따른 <u>특수임무유공자</u>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- 특수임무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며 희생한 분들로, 이들에 대한 지원과 예우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임. 따라서, 본 개정안은 특수임무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고, 이들의 명예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적절한 입법 조치라고 판단됨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개정안은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다하려는 취지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고,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.